

부상 근로자 지원관

산재보상 위원회 부상 근로자 지원관

328 State Street
Schenectady, NY 12305
(877) 632-4996
advinjwkr@wcb.ny.gov

부상 근로자 지원관은 근로자, 노동조합, 고용주, COSH 그룹 및 근로자 지원자 그룹에 중요한 산재보상 현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보내 교육 세션을 예약하십시오.

부상 근로자 지원관실(Office of the Advocate for Injured Workers)은 뉴욕주 내에서 근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관실 직원은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지침과 정보를 제공해 산재보상 시스템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상 근로자로서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77) 632-4996번으로 전화해 **Advocate for Injured Workers' office**를 요청하십시오. 지원관실 직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청구 제기 방법
- 사망 사고 시 대처 방법
- 사용해야 하는 양식
- 보장 대상자
- 분쟁 대상 청구
- 심리 및 이의제기권
- 시기적절한 청구 제기
- 기록 관리
- 의학적 치료 시 본인의 역할
- 이용 가능한 의료 급여 내용
- 재활과 사회복지

부상 근로자 지원관(Advocate for Injured Workers)은 주 전역의 노조, 고용주, 직업 안전/보건 단체 및 근로자 지원자 그룹과 논의해 산재보상 시스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근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

작업장 부상이 발생하면:

- 가능한 한 빨리 응급 처치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구합니다.
- 부상 사실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사고 후 3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 NYS 산재보상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부상일 후 2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합니다. 단,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직무 관련 질환이나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구해야 합니다.

직업병 관련 산재보상 청구는 반드시 장애인이 된 때로부터 2년 또는 그러한 상태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알게 되거나 의료 제공자로부터 들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 제기하기

가장 빠른 방법: wcb.ny.gov에 접속해 **File a Claim** (청구 제기)을 선택한 후, 웹 버전의 Employee Claim (종업원 청구)(양식 C-3)을 작성해 해당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양식 C-3 제출에 관해 질문이 있을 경우, (877) 632-4996번으로 전화하시면 산재보상 위원회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청구와 관련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877) 632-4996번으로 전화하세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드릴 것입니다.

- 청구인 성명
- WCB 케이스 번호(접수된 경우)
-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사안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있는 경우 수신한 연락 사항

청구인은 심리에 참석하고 가상 심리 및 e케이스 (eCase)를 통해 온라인으로 케이스 문서를 업로드/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wcb.ny.gov에서 확인하십시오.

의료비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해 승인을 받은 모든 의료비를 고용주 보험사에서 지불합니다. 이 비용은 근로 시간 손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이는 또한 임금 손실에 대한 급여에 더해 지불됩니다.

의료 제공자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의료 제공자 목록은 위원회 웹사이트 wcb.ny.gov 또는 의료국장실(Medical Director's Office)에 (800) 781-2362번으로 전화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 제공자 혹은 승인을 받은 경우 본인 주치의로부터 의료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실 임금 급여

산재보상 손실 임금 급여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 제공자의 적절한 의무 기록을 토대로 지불 가능합니다. 부상 또는 와병 날짜 전 52주 임금을 토대로 평균 주급의 3분의 2 수준에서 급여가 지불되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급여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대 급여 금액은 매해 7월 1일 자로 조정됩니다. 이는 매해 3월 31일 노동부 장관이 보험 감독관에게 보고하는 전년도 뉴욕주 평균 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상 또는 와병 시점에 하나 이상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동시 고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직장의 임금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 고용”의 경우, 임금을 합산해 청구인의 평균 주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새 최대 급여가 법으로 채택되더라도 부상 근로자가 받는 급여 요율 (부상일을 기준으로 결정된)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 사기는 E급 중범죄로, 4년 이하의 징역 및 5,000 달러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가장 좋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은 사고입니다

뉴욕주 산재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는 보상 급여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고 법규 준수를 장려함으로써 종업원과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산재보상 위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cb.ny.gov를 방문하세요.